

1. 제정이유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방법, 정보 제공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관관리자 지정 및 사용자별 권한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안 제4조~제7조)
-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 수립 및 변경·해제 사항을 입력·관리 하고,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을 등재 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전산자료의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0조, 안 제12조)
- 라. 지역·지구등의 코드 구성·부여기준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 마.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업무관리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영문표기는 "Korea Land use Infomation Platform"이며 "KLIP"로 약칭한다.
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3. "기관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사용기관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통합플랫폼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통합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용기관 장의 역할) 사용기관의 장은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통합플랫폼 기관사용자 관리
2. 통합플랫폼 전산자료의 입력·수정 등 자료 현행화
3. 통합플랫폼의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4. 기관 내 사용자 간 업무 분담과 통합플랫폼 운영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관관리자의 지정) ① 사용기관의 장은 사용기관의 시스템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관리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보안관리 등 사용기관에서 통합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사용자권한 부여)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관리자는 통합플랫폼의 사용자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관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 신청) ① 사용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통합플랫폼의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플랫폼의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에 등재한 자료를 해당 지역·지구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 정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의 정비에 대해서는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도지사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①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시스템의 연계)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코드의 구성) ① 통합플랫폼에 정보를 등재하는 지역·지구등의 코드 구성 및 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지역·지구등의 도형정보에 대한 관리번호는 그림1과 같이 부여하며 지정권자 및 시·군·구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 관리) 통합플랫폼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81호, 2022. 12.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자 권한 부여 기준

구분	사용자 권한	사용 권한 내역
기관관리자	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	시스템 운영관리, 통계조회, 게시판
사용자	도시계획 담당자	도시계획관리, 통계조회, 게시판, 지역·지구 관리프로그램(고시내용 등재·확인·수정)
	도시계획위원회 담당자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통계조회, 게시판
	재해취약성 분석 담당자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입력·조회·발급, 통계조회, 게시판
	지역·지구 고시정보 담당자	지역·지구 관리프로그램(고시내용 등재·확인·수정), 통계조회, 게시판

지역·지구등의 코드 구성 및 부여 기준

□ 코드 구성

지역·지구등 레이어 코드	*	*	*	*	*
	법률구분(영문 2자리)		세부법령(숫자 1자리)	지역·지구 대분류(숫자 2자리)	

지역·지구 등 코드	*	*	*	*	*	*
	법률구분(영문 2자리)		지역·지구 중분류(숫자 1자리)	지역·지구 소분류(숫자 3자리)		

□ 코드 부여기준

구분		세부 부여기준											
법률구분		영문(2)	법령	분야별 구분									
			U	A	국토종합	B	지역	D	도시	E	농업		
				F	산림	G	수산	H	공업	I	교통		
				J	수자원	K	정보통신	L	에너지	M	환경		
				N	국방	O	교육문화	P	재난재해	Q	국토계획		
			조례	지자체별 구분									
			Z	A	서울	B	부산	C	대구	D	인천	E	광주
				F	대전	G	울산	H	경기	I	강원	J	충북
				K	충남	L	전북	M	전남	N	경북	O	경남
				P	제주	Q	세종						
세부법령		숫자(1)	- ‘1’ 부터 ‘9’ 까지 순차 부여										
지역 · 지 구등	대분류	숫자(2)	- ‘01’ 부터 10단위로 부여, 세분류가 존재하는 경우 1단위로 부여										
	중분류	영문(1)	- ‘A’ ~ ‘Z’ 까지 순차 부여										
	소분류	숫자(3)	- ‘100’ 부터 100단위로 부여, 세분류가 존재하는 경우 10단위 및 1단위로 부여										

* 기 부여된 코드 중 규정과 불일치하는 코드는 현행을 유지하고 신규부여 시 부여기준에 따라 코드 부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 축척 및 색상 등 기준

구분	적용기준																																																																																																													
축척	○ 대상 필지의 연속지적도가 확인도면 내에 모두 표출될 수 있도록 최적의 축척을 적용																																																																																																													
색상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아래 배경색을 적용하고 라인 굵기는 0.5pt로 라인색은 투명으로 지정																																																																																																													
	연번	코드	배경색	배경RGB	지역지구명	1	UQA111		255,255,220	제1종전용주거지역	2	UQA112		255,255,150	제2종전용주거지역	3	UQA121		235,235,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	UQA122		210,2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	UQA123		185,185,0	제3종일반주거지역	6	UQA130		160,160,20	준주거지역	7	UQA210		255,110,110	중심상업지역	8	UQA220		255,140,140	일반상업지역	9	UQA230		255,210,210	근린상업지역	10	UQA240		255,190,190	유통상업지역	11	UQA310		235,215,250	전용공업지역	12	UQA320		225,190,250	일반공업지역	13	UQA330		210,155,250	준공업지역	14	UQA410		200,250,140	보전녹지지역	15	UQA420		130,240,5	생산녹지지역	16	UQA430		120,220,10	자연녹지지역	17	UQB100		100,200,200	계획관리지역	18	UQB200		150,220,220	생산관리지역	19	UQB300		200,240,240	보전관리지역	20	UQC001		150,250,150	농림지역	21	UQD001		70,250,70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번	코드	배경색	배경RGB	지역지구명																																																																																																									
	1	UQA111		255,255,220	제1종전용주거지역																																																																																																									
	2	UQA112		255,255,150	제2종전용주거지역																																																																																																									
	3	UQA121		235,235,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	UQA122		210,2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	UQA123		185,185,0	제3종일반주거지역																																																																																																									
	6	UQA130		160,160,20	준주거지역																																																																																																									
	7	UQA210		255,110,110	중심상업지역																																																																																																									
	8	UQA220		255,140,140	일반상업지역																																																																																																									
	9	UQA230		255,210,210	근린상업지역																																																																																																									
	10	UQA240		255,190,190	유통상업지역																																																																																																									
	11	UQA310		235,215,250	전용공업지역																																																																																																									
	12	UQA320		225,190,250	일반공업지역																																																																																																									
	13	UQA330		210,155,250	준공업지역																																																																																																									
	14	UQA410		200,250,140	보전녹지지역																																																																																																									
	15	UQA420		130,240,5	생산녹지지역																																																																																																									
	16	UQA430		120,220,10	자연녹지지역																																																																																																									
	17	UQB100		100,200,200	계획관리지역																																																																																																									
	18	UQB200		150,220,220	생산관리지역																																																																																																									
	19	UQB300		200,240,240	보전관리지역																																																																																																									
	20	UQC001		150,250,150	농림지역																																																																																																									
	21	UQD001		70,250,70	자연환경보전지역																																																																																																									

전 산 자 료 제 공 요 청 서

요청목적			
근거법령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성명	직급	전자우편주소
이용기간			
자료요청내역			
제공 방법	[]전자파일 []그 밖의 방법()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 []기타()		
보안관리 및 폐기계획			
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이 별도 있을 경우만 작성		
소재지			
사업책임자	부서명		연락처
	성명	직급	전자우편주소
사업명			

위와 같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날인)

귀하

보안각서

본인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예외임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수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수령증

수령 자료 내역	
수령 방법	
수령 일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전산자료를 위와 같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성명	직급	전자우편주소
수행 기관	업체명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성명	직급	전자우편주소
정보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연계목적				
근거법령				
기대효과				
연계정보 내역				
연계 범위				
연계 시기				
연계 방식				
정보이용주기				
안전관리대책				